

선	기관위원장
람	

제1499호 2020. 3. 9(월)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39호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40호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4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	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42호	인천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	1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43호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44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만 조례 일부개정조례	-----	2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4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	-----	2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46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2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47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	2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48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	-----	3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49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4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50호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44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51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4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52호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 4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53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 5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54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5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55호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 ----- 59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86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 60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4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70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47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 72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4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78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03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8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05호 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안) ----- 8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17호 인천광역시 서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9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23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10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3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39호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①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구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2조에 따른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예산낭비신고 등 시정요구 및 제안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는 서구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우편, 팩스 및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 등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제6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감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3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40호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

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3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4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지나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공공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공공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익의 비교형량)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

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 하여 서로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지나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제15조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촉직 위원은 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공공갈등조정 및 관리경험이 있는 전문가

2.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변호사, 언론인

3.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이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이 조례를 위반한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⑩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참여할 수 없다.

⑪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2.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활용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등 정비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심의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갈등조정협의회)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 당사자 및 전문가로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갈등 사안이 종료되면 자

동 해산한다.

⑥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4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활용할 수 있다.

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활용
3.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16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과 협의회 위원 및 제15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공공갈등심의 또는 공공갈등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

람에게 흘리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또는 제12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3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42호

인천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의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

항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을 추진한다.

1.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당파적·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구축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통일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서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4.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5.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구청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통일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통일교육의 반영) 구청장은 공무원·주민 등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3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43호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하며, 두 차례로 제한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3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44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제4항제2호”를 “제38조제4항제1호”로, “다음 각 호와 같이”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3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4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체 없이”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10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3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46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인복지법 제4조”를 “「노인복지법」 제4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수립시”를 “수립 시”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개·보수”를 “개수·보수”로 한다.

제13조 중 “조례가”를 “조례로”로 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를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3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47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구민의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 구현이 가능할 수 있

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②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이하 “문화도시정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각종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정책, 행사에 대한 평가에 구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서 제출된 구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면서 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구민의 문화권 보장

제5조(구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①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문화예술 접근·참여·창작

의 기회를 확대하고, 구민이 문화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을 위해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다양한 문화의 공존) ① 구청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계층이나 지역의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7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① 구청장은 문화적 공간을 조성할 경우 지역 간 문화격차를 줄이고 구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예술의 육성) ① 구청장은 시민과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문화도시 정책의 수립

제9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문화 예술·구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산업·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종합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구민, 전문가 및 문화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기초조사 등)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4장 문화도시추진위원회 및 문화도시 추진단

제12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민간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하여 구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정책
2. 문화도시 관련 현안사항
3. 문화도시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에 관한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국장과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구민사회단체 대표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7조(간사 등) 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문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업무 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제18조(문화도시추진단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의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구문화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9조(문화도시추진단의 기능) 추진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홍보·운영 및 인력관리 등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도시협의체 구성·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문화도시 조성지원)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2.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
3.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허가)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그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22조(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문화예술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에 대한 검사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검사결과 문화예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3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48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 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동아리”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생활문화단체”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구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시에 소속되거나 거주지를 두고 있는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생활문화 진흥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예산의 규모와 확보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
2.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3.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4. 동호회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학교 등)의 운영자가 주민문화예술단체, 동호회에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구청장은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우수자 등 표창) ① 구청장은 해마다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한 지원대상자(이하 “우수자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관련 주요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2. 국내·외에 시의 위상을 선양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유공자로 인정한 경우

② 구청장은 우수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문화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에 있어 우선할 수 있다.

제3장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문화협의회

제9조(설치) 구청장은 생활문화 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문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
2. 사업의 평가·연구 및 보고
3.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을 위한 시설 운영
4. 동호회 네트워크 운영 및 사회공헌 기회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1명
2.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 관련 업무담당 국장
3. 문화예술단체장 1명
4. 생활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한다.

제12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① 협의회 위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회의) ① 협의회는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

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시설

제15조(설치) ① 구청장은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생활문화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명칭은 지역명(○○)생활문화센터로 한다
2. 위치는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 조성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학습, 연습 공간 제공
2. 그 밖의 회의·전시·공연 등을 위한 소통 공간

제17조(이용) ① 제19조제1호의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등은 구청장에게 사용 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구청장이 사용 승인한 때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사용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의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장 보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3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49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행정절차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3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50호

인천광역시 서구 분노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분노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행정절차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3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51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하며, 청라동은 전용봉투를 사용하며, 청라동에서 사용가능한 전용봉투와”를 “하며,”로 하고, “제작·보급토록 하며”를 “제작·보급토록 하고”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13조에 따른”을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거용기”를 “수거용기, 무선주파수인식(RFID)방식 종량제 기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량배출사업장은”을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를 “음식물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을 “작성”으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을 “다음 연도 2월말”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변경신고서”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기별료”를 “연”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가격(제10조제3항 관련)**가. 납부필증 가격**

구 분	표시용량(ℓ)	가격(원)	비 고
개별용기	<u>2</u>	<u>120</u>	
	3	180	
	5	300	
공동배출 용기	60	3,600	
	120	7,200	

나. 전용봉투 가격

구 분	표시용량(ℓ)	가격(원)	사용가능 구역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u>1</u>	<u>60</u>	청라동
	2	120	
	3	180	
	5	300	
	10	600	
	20 (김장쓰레기 전용)	1,200	서구 지역 (청라동 제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3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52호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가족처럼 생각하여 가까이 두고 보살피며 기르는 개·고양이 등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3조에 의한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적절한 사육·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① 주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법 제8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 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배려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반려동물 배려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을 배려하는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3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53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영위하는”을 “운영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러한 법 제14조제1항”을 “이러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7호 중 “영위하는”을 각각 “운영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및 영 제2조”를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소요비용”을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 중 “영위하는”을 각각 “운영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일한”을 “같은”으로, “영위”를 “운영”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영위하는”을 “운영하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구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3조 중 “구청장은 규칙 제7조”를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로 한다.

제18조제3호 중 “저해”를 “방해”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얻어”를 “받아”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구비하여”를 “갖춰”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 (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구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완료한”을 “마친”으로, “완료하고”를 “끝내고”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치하고”를 “갖춰 두고”로 한다.

제6장에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를 철회)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

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 소유자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제3항 중 “증빙서류를 비치하고”를 “증명서류를 갖춰 두고”로 한다.

제31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한다.

제32조의2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로 한다.

제32조의3제2항 중 “소요되는”을 “사용되는”으로 한다.

제33조를 제32조의5로 하고,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

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기간은 5년 단위로 할 수 있고,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로 한정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4조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35조 중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송부함”을 “보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38조 중 “제37조 제2항”을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통보한다”를 “알린다”로 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3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54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 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방안
- 라.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방안 및 일자리 질 향상
- 마. 청년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 지원
- 바. 청년의 권리보호 방안

제9조제7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3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55호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75세”를 “만 70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3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86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및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 등

(제3조제1항 관련)

1. 개별용기 배출

구 분	배 출	수 거
요일(횟수)	일, 화, 목/월, 수, 금(주3회)	월, 수, 금/화, 목, 토(주3회)
시 간	20:00~24:00	00:00~ 12:00
장 소	주택 및 업소 문전	주택 및 업소 문전

2. 공동용기 배출

구 분	배 출	수 거
요일(횟수)	제한 없음	월, 수, 금/화, 목, 토(주 3회)
시 간	제한 없음	00:00~ 12:00
장 소	전용수거용기 설치 장소	전용수거용기 설치 장소

[별표 2]

1.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재질: 플라스틱(PP, HDPE)
2. 규격

종류(주 용도)	내부용량 (ℓ)	색상	구 조	비고
단독주택 및 소규모 사업장	<u>2</u>	몸체-회색 뚜껑-주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뚜껑과 몸체 일체형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 - 손잡이 달린 거름망 내부용기 탈·부착 - 용량은 내부용기에 의함 	
	3			
	5			
공동주택용	60	<u>몸체-회색</u> <u>뚜껑-주황</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뚜껑과 몸체 일체형 - 운반·이동용 손잡이 및 바퀴 부착 - 기계식 상차 가능 	
	120			

주¹) 배출량에 따라 용량을 선택하여 사용 가능

3. 외부 표시사항(뚜껑, 몸체): 기관명과 문장, 용기의 종류 및 용량, 주의사항, 배출자 기재란 등

2.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규격(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u>1ℓ</u>	2ℓ	3ℓ	5ℓ	10ℓ	20ℓ
봉투규격 (가로×세로,Cm)	<u>15×29.5</u>	19×35.5	22×39.5	26×46.5	33×56.5	42×69.5

※ 봉투규격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을 포함한다.

3.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제작사양(제5조제1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쓰레기봉투(ℓ)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라동)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문의처 : 서구청 자원순환과(☎560-4411~4)

서구 시설관리공단(☎580-1180~5)

공급원 : 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

제조원 : 업체명(☎ -)

※ 상기 사양은 1ℓ, 2ℓ, 3ℓ, 5ℓ, 10ℓ봉투의 표준 사양임.

※ 글씨체는 명조체로 하고 글씨색은 봉투색과 대조되는 색을 사용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쓰레기봉투(20ℓ)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
(김장쓰레기)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라동 제외)내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문의처 : 서구청 자원순환과 (☎560-4411~4)

서구 시설관리공단 (☎580-1180~5)

공급원 : 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

제조원 : 업체명(☎ -)

[별표 3]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기준

(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규 격	색상	표 시 사 항	비고
<u>2ℓ</u>	<u>가로 70mm</u> <u>세로 45mm</u>	<u>하늘색</u>	기관명과 문장, 표시용량, 주의사항, 제작일련번호 및 전자인식부호(바코드) 등	
3ℓ	가로 70mm 세로 45mm	연두색		
5ℓ	가로 70mm 세로 45mm	연분홍		
60ℓ	가로 90mm 세로 65mm	살구색		
120ℓ	가로 90mm 세로 65mm	연노랑		

[별표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개별용기 판매수수료

(제8조제3항 관련)

1. 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판매가격

-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별표 3의 규정에 따른다. 단, 전용수거용기 판매가격은 조달가+판매수수료로 하며, 원단위는 절사한다.

2. 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공급가격

-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공급가격 = 판매가격 - (판매가격 × 판매수수료율)
※ 소수점이하 올림
- 전용수거용기 공급가격: 조달가(매년 1월 1일 조달청 판매금액)

3. 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판매수수료율

구분	규격	판매가격(원)	공급가격(원)	판 매 수수료율(%)	비고		
납부필증	<u>2ℓ</u>	조례 “별표3”	판매가격 - (판매가격 × 판매수수료율)	<u>7</u>			
	3ℓ			7			
	5ℓ			7.5			
	60ℓ			7			
	120ℓ			7			
음식물류	<u>1ℓ</u>					<u>7</u>	
	2ℓ					7	
폐기물	3ℓ					7	
	5ℓ					7.5	
전용봉투	10ℓ					8	
	20ℓ					7	
전용수거 용기	2ℓ	조달가+판매수수료	조달가	<u>10</u>			
	3ℓ			10			
	5ℓ			10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0-4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1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3.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1블록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덕평산업개발(주) (대표자 양민석)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1블록
 - 나. 대지면적 : 21.818㎡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72,806.1978㎡ (지하2층, 지상29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5개동 510세대 및 이에 따르는 부대·복리시설
 - 마. 사 업 비 : 189,833,080천원
4. 사업기간 : 2019. 12. 01. ~ 2022. 12. 31.

5. 변경사항 : 가설흙막이 변경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0-47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기간 : 2020. 3. 9.(월) ~ 4. 8.(수) (30일)

2. 고시내용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3. 목 적

-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리를 보장하여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시키고자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함께 협력해 나가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 절차 이행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 제154조(행정협의회의 규약)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5. 문 의 :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행복과 아동친화정책팀 (032-560-5756)

붙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1부.

2020. 3. 9.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2015. 9.14. 제정

2016.11.16. 개정

2017.11. 3. 개정

2018. 9.13. 개정

2019. 9.24. 개정

제1조[목적]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9.24.)

제2조[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 1.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 2.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 3.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 4.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협의회는“별표”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된다.(개정 2019. 9.24.)

제4조[임원 및 조직]

- ①협의회에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1인, 부회장 5인 이내, 감사2인, 고문 등을 두며 임원진 외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자문단 등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6.11.16.)
- ②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부회장과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고문은 전임 회장과 광역지자체 단체장이 된다.(개정 2017.11.3.)

-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1.3.)
- ④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이 된다. (개정 2017.11.3., 2019. 9.24.)

제5조[임원의 임기]

- ①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해당 단체장의 임기로 한다. 단 고문인 광역자치단체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1.3.)
- ②회원인 지방정부의 장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 ①회장은 협의회 총회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개정 2017.11.3.)
- ②협의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7.11.3.)
- ③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회원이 사전에 대표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사항에 따른다(개정 2016.11.16.)
- ⑤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

- ①회장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각 지방정부의 아동친화도시 관계기관 및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의 배부]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 ①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등]

- 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②실무협의회는 협의체 소속 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소속 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
- ③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2조[경비의 부담 및 사용]

- ①협의회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하고, 이를 위하여 협의회는 매년 정기총회 시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결정·통보하여야 하며, 참여자치단체는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결정된 부담금을 협의회장 자치단체에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3., 2019.9.24.)
- ①의2 ①항의 공동사업이라함은 회원 지자체들이 아동친화도시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2019. 9.24.)
- ②납부된 부담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9.13.)
 1. 총회 및 실무진회의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2. 포럼 및 박람회 개최, 사례집 제작 등 아동친화도시 확산에 필요한 사업
3. 아동권리 교육교재 및 아동권리 홍보물 제작 등 아동권리 인식증진에 필요한 사업
4.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신설 2019. 9.24.)
5.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신설 2019. 9.24.)
6. 협의회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사업(신설 2019. 9.24.)
7.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신설 2019. 9.24.)

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 ①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협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3.)
- ③감사 지자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보고한다. (신설 2017.11.3.)
- ④협회의 부담금 예산을 회장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집행한다.(신설 2019. 9.24.)

제14조[규약개정]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6조[가입 및 탈퇴]

- ①본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 ②본 협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 ③본 협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협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회의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탈퇴 처리한다.

별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자치단체(개정 2019. 9.24.)

지역	지자체명
서울 (2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송파구, 강동구, 중구, 구로구, 관악구, 양천구, 동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 강남구
부산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하구
인천 (3)	인천광역시, 동구, 서구
광주 (3)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대구 (2)	중구, 달서구
대전 (3)	유성구, 대덕구, 서구
울산	북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7)	충주시, 음성군, 옥천군, 제천시,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충남 (7)	보령시, 아산시, 당진시, 논산시, 부여군, 천안시, 홍성군
경기 (12)	수원시, 광명시, 오산시, 시흥시, 화성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이천시, 평택시, 성남시, 군포시
강원 (3)	횡성군, 원주시, 춘천시
전북 (4)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전남 (5)	광양시, 순천시, 화순군, 장흥군, 나주시
경북 (4)	구미시, 영주시, 포항시, 칠곡군
경남 (2)	김해시, 창원시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0-4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3.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봉수대로 307 외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03.09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 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0-03-09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879	인천광역시 서구 풍수대로 307 (석남동)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풍수대가 있었음	
2	인천광역시 서구 급곡동 350-13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1532 (급곡동)	20090706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급산 싸움에서 7백 의병과 함께 전사한 조원신생의 호를 따서 제명	
3	인천광역시 서구 급곡동 0 (식물단지 6가구 4획지)	인천광역시 서구 소담로 24 (급곡동)	20191223	음식이 풍족하여 먹음직스러운 모양을 이르는 중 우리말에서 착안	(주)지연인터내셔널
4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226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97번길 33-33 (석남동)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4-56	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245번길 24 (원창동)	20090922	북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고시일 : 2020-03-09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1	오류동 412-8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188번길 33 (오류동)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188번길 33 (오류동)	소유자 신청	20081231	검단로의 사측지점에서부터 약 1,6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오류동 41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188번길 39 (오류동)		20081231	

인천광역시 서구 제2020-403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의거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20. 3. 9. ~ 2020. 3. 23.(15일간)

2. 공 고 내 용

1. 행정처분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차량	등록번호	57우4000 외 9건(붙임 참조)		
	차 명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5747, FAX 032-560-2793)		

3. 유의사항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2)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3)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무등록 자동차)를 운행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 (☎ 032-50-57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명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비고
1	57우4000	여*현	2020.02.05	
2	39다5884	이*원	2020.02.05	
3	80고5313	정*득	2020.02.11	
4	66루5277	김*태	2020.02.13	
5	68오7996	오*례	2020.02.13	
6	21라6255	장*용	2020.02.13	
7	53라9132	김*철	2020.02.17	
8	50가5048	하*준(**상사)상품용	2020.02.20	
9	48조2129	김*식	2020.02.25	
10	48부3248	국*진(*** 선택)상품용	2020.02.28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0-405호

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안)

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0. 3.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 없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변경 없음)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 가.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체육시설	다목적체육관	마전동 905-6,-7	-	증)1,265.3	1,265.3		
	계		1개소		-	증)1,265.3	1,265.3		

나. 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1	체육시설	○ 체육시설 신설 -면적 : 1,265.3㎡	○ 부족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실내형 생활체육시설(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해 체육시설 신설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A-1용도)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번호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도면 표시 번호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A-1	12	3,186.2	1-1	232.8	-	A-1	12	1,920.9	1-1	232.8	-
			1-2	259.1	-				1-2	259.1	-
			1-3	437.1	-				1-3	437.1	-
			2	470.4	-				2	470.4	-
			3	257.9	-				3	257.9	-
			4	51.1	-				4	51.1	-
			5	177.1	-				5	177.1	-
			6	540.2	-				-	-	-
			7	725.1	-				-	-	-
			8	35.4	-				8	35.4	-

나. 체육시설(D-6용도)

1) 체육시설용지(D-6)의 결정(변경) 조서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	-	-	-	-	-	D-6	12	1,265.3	6	1,265.3	-

2) 체육시설용지(D-6)의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획지계획 변경 - 체육시설 신설	○ 기존 단독주택용지 12-6, -7(마전동 905-6, -7번지)에 체육시설 신설에 따른, 가구 및 획지 계획 변경(12-6, -7 ⇒ 12-6)

5.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가. 단독주택용지(A-1용도)

(기 정)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1 (단독주택 용지)	3, 4, 5(1-1~2-4,4-1~11), 10, 11, 12, 13, 15, 16(2,4), 17, 18, 20(1~4-2,6-1~11), 21, 22, 23(1-1~8-3)	용도	허용용도	○ 별표1 A-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 A-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형 태	○ 별표3의 단독주택용지	
		배 치	○ 별표2의 단독주택용지	
		색 채	○ 별표6의 색채계획	
		건 축 선	○ 별표2의 단독주택용지	

(변 경)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1 (단독주택 용지)	3, 4, 5(1-1~2-4,4-1~11), 10, 11, 12(1-1~5,8), 13, 15, 16(2,4), 17, 18, 20(1~4-2,6-1~11), 21, 22, 23(1-1~8-3)	용도	허용용도	○ 별표1 A-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 A-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형 태	○ 별표3의 단독주택용지	
		배 치	○ 별표2의 단독주택용지	
		색 채	○ 별표6의 색채계획	
		건 축 선	○ 별표2의 단독주택용지	

나. 체육시설용지(D-6용도)

1) 체육시설용지(D-6)의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6 (체육시설 용지)	12(6)	용도	허용용도	○ 별표1 D-6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 D-6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15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 별표2의 체육시설용지	

2) 체육시설용지(D-6)의 결정(변경) 사유서

결정 내용	결정 사유
○ 체육시설 신설	○ 12-6(마전동 905-6, -7번지)에 체육시설 신설에 따른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신설 ※ 당초, 단독주택용지(A1용도)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및 건축선 계획 반영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별표 1] 건축물 용도 분류표

구 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
		전층 불허용도	1층불허용도			
제1 종 일반 주거	체육 시설 D-6 ○ 체육시설 운동시설	중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50	○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제외)

[별표 2] 건축물 배치 분류표

구분	도면 표시	건축물의 배치
체육 시설	D-6	○ 건축한계선 - 도로변: 1m

II.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1.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의견제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 : 열람 장소에 비치

III.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5772, 서구 서곶로 307)

IV.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의견서

일 시	2020. . .
성 명	
주 소	※ 회신가능한 주소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연 락 처	※ 회신가능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도시계획 변경사항	도시계획시설(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사항	
※ 의견사항에 대한 사유를 기재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20 - 417호

인천광역시 서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3.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정이유

- 서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용어의 정의(한정면허, 광역급행형버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자, 수익성 없는 노선, 적자손실액)(안 제2조)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서구를 기점으로 하고 버스 운행 및 주요 정류소가 서구에 있는 비수익노선운행 운송사업자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1년간 운행실적인 있는 경우 적자손실액의 50% 범위 내 지원)(안 제3조)
- 운송원가 산정 용역에 관한 사항(적자손실액에 대한 합리적 지원근거 산정)(안 제4조)
- 재정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적자손실액 산정에 관한 사항(운송원가, 운송수입금을 반영하여 적자손실액 산정)(안 제6조)
-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지원의 타당성, 적자손실액의 적정성,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안 제7조)
- 재정지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재정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법규 위반 및 목적외 사업수행 등)(안 제9조)
-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안 제11조 ~ 제19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화 032-560-4854, 팩스 032-560-275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서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한정면허, 광역급행형버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자, 수익성 없는 노선, 적자손실액)(안 제2조)

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서구를 기점으로 하고 버스 운행 및 주요 정류소가 서구에 있는 비수익노선운행 운송사업자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1년간 운행실적인 있는 경우 적자손실액의 50% 범위 내 지원)(안 제3조)

라. 운송원가 산정 용역에 관한 사항(적자손실액에 대한 합리적 지원근거 산정)(안 제4조)

마. 재정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바. 적자손실액 산정에 관한 사항(운송원가, 운송수입금을 반영하여 적자손실액 산정)(안 제6조)

사.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지원의 타당성, 적자손실액의 적정

성,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안 제7조)

아. 재정지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자. 재정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법규 위반 및 목적외 사업수행 등)(안 제9조)

차.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안 제11조 ~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제2호 및 제22조(조례)

2)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나. 예산조치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다. 합 의 : 관련부서 공문 별도 시행(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면허를 말한다.
2.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광역급행형 운행 버스를 말한다.
3.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하 “비수익노선”이라 한다)이란 버스의 운송수입금이 제6조에 따라 산정된 운송원가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
5. “적자손실액”이란 운송수입이 운송원가 산정 용역에 따른 운송원가 보다 적어 발생한 손실액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

부장관으로부터 한정면허를 얻어 서구를 기점으로 하고 버스 운행 및 주요 정류소가 서구에 있는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가 적자손실액에 대한 재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비수익노선을 1년 이상 운행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적자손실액의 50% 이내로 한다.

제4조(운송원가 산정용역 실시) ① 구청장은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운송원가 산정용역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 또는 인천광역시장이 광역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준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송원가 산정용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건비
2. 연료비(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연료비 보조금은 제외한다)
3. 차량정비관리비
4. 복리후생비
5. 차량보험료
6. 그 밖의 비용

③ 제2항제4호의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운송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운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붙임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 날짜 및 면허번호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4. 적자손실액
5.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②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변경·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신청서 및 붙임서류에 대해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적자손실액 산정) ① 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제4조의 사항을 포함한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을 산정하여 적자손실액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수입금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운송수입금은 현금·카드 등 은행수입, 버스운송매체를 통한 광고수입 등 모든 수입을 계상하여야 한다.
2. 운송수입금은 학생 및 국가유공자 등의 각종 공적할인보조금과 환승할인보조금 및 국가와 시의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서구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및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2. 적자손실액의 적정성
3.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게 지원받은 재정자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 받은 자금을 제2항에 따른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재정지원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 보조금의 지급내역 및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결과를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중단)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재정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광역급행형 시내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구청장을 자문한다.

1.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제도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교통분야 관련 국장,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서구의회 의원
2.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연구기관 연구원
3. 공인회계사,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직능대표
4.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는 운수업체나 운수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구 또는 유관 기관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은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한 경우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정책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접 그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제3조제1항의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재정지원 신청은 공포일 이후 1년 이상의 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

신청업체	법인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사업명칭				
면허종류		면허일자		면허번호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받고자 하는 사유				
총사업비	원			
지원신청 금액	원	자기자본 부담액	원	
사업기간				
<p>「인천광역시 서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업체(법인명 및 대표자) (서명 또는 인)</p> <p>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p>				
거래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붙임서류	1. 보조금 사용계획서 2. 사업비 산출내역서 3. 그 밖에 산출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p>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신청업체(법인명 및 대표자) (서명 또는 인)</p>				

별지1**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제2호 및 제22조(조례)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

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423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3. 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할 것을 목적에 명시

- 구청장의 책무에 폐기물 발생지처리원칙에 입각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할 경우 인천광역시종합계획과 인천광역시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해 노력해야하는 구민의 의무 신설
- 대형폐기물 품목 정비 등에 따른 별표 서식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자원순환과

- 전화번호 : 032-560-4391 (FAX 560-2760)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순환이용 및 적절한 처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순환이용 및 적절한 처분을 촉진할 것을 목적에 명시 (안 제1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폐기물 발생지처리원칙에 입각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할 경우 인천광역시종합계획과 인천광역시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안 제4조제3항, 제4항)
- 다.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해 노력해야하는 구민의 의무를 신설 (안 제4조의2)
- 라. 대형폐기물 품목 정비 등에 따른 별표 서식 수정(안 별표 1부터 별표 9까지)
- 마. 「질서행위규제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중복된 서식 삭제(안 별지 서식1호부터 별지 서식11호까지)
-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나. 개 정 안 : 별지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중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절한 처분을 촉진함”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별표 10”을 “별표 2”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을 “생활폐기물관리 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3항 중 “생활폐기물관리제외 지역”을 각각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폐기물처리시설등의 설치·운영)”을 “(구청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 발생지처리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국토기본법」에 따른 인천광역시중

합계획과, 같은 법 제4조의 인천광역시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구민의 의무) 구민은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규격봉투 외에 별도로 지정된 폐기물봉투”를 “가정사업계용봉투”로,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조제4항”을 “제2조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후단 중 “운반할 수 있으며 처리절차·방법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를 “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를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제1”을 “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제7조에 따라”를 “제7조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단서 중 “1월”을 “1개월”로 한다.

제9조의3제2항 중 “만료일로”를 “만료일”로 한다.

제1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폐기물 수수료 및 쓰레기 종량제 실시

제10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생활쓰레기중”을 “생활쓰레기 중”으로, “담아야 한다.”를 “담는 봉투”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생활쓰레기중”을 “생활쓰레기 중”으로, “담아야 한다.”를 “담는 봉

투”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생활쓰레기중”을 “생활쓰레기 중”으로, “담아야 한다.”를 “담는 봉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사업계용봉투는”을 “가정사업계용봉투:”로 “담아야 한다.”를 “담는 봉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담아야 한다.”를 “담는 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3과”를 “별표 4와”로 한다.

일반용봉투의 용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제11조제2항 중 “별표 10”을 “별표 5”로, “고유번호등”을 “고유번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및 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6-1부터 별표 6-5까지로 하고,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제작규격은 별표 7과 같다.

제12조제2항 중 “별표 6”을 “별표 8”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별표 10”을 “별표 2”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별표 7”을 각각 “별표 9”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공급할”을 “제공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조례의 규정에”를 “조례를”로 한다.

제16조 단서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16조의2 단서 중 “휴지등”을 “휴지 등”으로 한다.

제1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7조 중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제3항까지의”로, “따르며, 이에 대한 관련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별표 10을 삭제하고, 별표 1부터 별표 9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이나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수료(제2조, 제13조 관련)

품명	규격	수수료(원)
가스(오븐)렌지	1M 미만	2,000
	1M 이상	4,000
거울	반신거울(소)	2,000
	전신거울(대)	5,000
다리미판	모든 규격	2,000
돛자리	모든 규격	5,000
문갑(거실장)	모든 규격	6,000
문짝	목재	4,000
	철재	5,000
문틀	소	3,000
	대	5,000
바둑판	소(얇은 판)	1,000
	대(두꺼운 판)	2,000
밥상	대(1.2m 이하), 4인용 미만	3,000
	대(1.2m 이상), 4인용 이상	4,000
방충망	소(창문)	3,000
	대(문)	4,000
변기	모든 규격	5,000
병풍	모든 규격	5,000
빨래건조대, 행거(옷걸이)	모든 규격	3,000
서랍장	5단 미만	6,000
	5단 이상(3단양수 포함)	8,000
세면기	모든 규격	5,000
소파	1인용	5,000
	2인용	6,000
	3인용	10,000
	4인용 이상	11,000
	테이블	3,000
수납장	다용도 수납장	4,000
스탠드 벽시계	일반	5,000
식탁	6인용 미만(의자 별도)	6,000
	6인용 이상(의자 별도)	7,000
신발장	소(1.5m 미만)	3,000
	대(1.5m 이상)	6,000
쌀통	일반	3,000
	다용도	4,000
싱크대(싱크대찬장 포함)	대(1m 미만)	4,000
	대(1m 이상)	6,000
아이스박스	소(길이 50cm 미만)	2,000
	중(길이 1m 미만)	3,000
	대(길이 1m 이상)	5,000
액자	소(대각선 0.5m 미만)	2,000
	중(대각선 0.5~1.5m)	3,000
	대(대각선 1m 초과)	5,000
여행용 가방	소(기내용)	3,000

품명	규격	수수료(원)
	대(화물용)	5,000
오락기	일반	10,000
오르간	모든 규격	6,000
옥돌 자석매트(자석요)	모든 규격	11,000
옥조	모든 규격	10,000
유리	식탁 및 책상유리	3,000
유모차(보행기)	모든 규격	3,000
의자	모든 규격	4,000
자동판매기	소(1m미만)	6,000
	대(입식 1m 이상)	10,000
자전거	소(어린이용)	4,000
	대(일반 어른용)	5,000
장롱	1쪽3자 0.9m 미만	8,000
	1쪽(3자)0.9~1.2m	10,000
	1쪽(4자)1.2m 이상	11,000
장식장(차단스)	소	4,000
	중	6,000
	대	8,000
장판	5m 미만	4,000
	5m 이상	5,000
재봉틀	소	3,000
	대	5,000
전기장판	모든 규격	6,000
책상	상판	3,000
	컴퓨터 책상	5,000
	편수(외서랍, 무서랍)	6,000
	양수(양서랍)	7,000
책장(책꽂이)	소(3단 이하)	5,000
	대(3단 이상)	6,000
침대(매트리스)	1인용	8,000
	2인용	9,000
	유아용 침대	3,000
침대머리	모든 규격	3,000
침대틀	1인용	3,000
	2인용(퀵사이즈 포함)	4,000
	돌침대(돌 포함)	12,000
	유아용 침대	5,000
카펫트	소(길이1.5m 미만)	5,000
	중(길이2.5m 미만)	7,000
	대(길이2.5m 이상)	12,000
탁자	10인용 미만	5,000
	10인용 이상	9,000
피아노	일반(얼라이트)	11,000
	대형(그랜드)	12,000
향아리(화분)	소(40cm 미만)	3,000
	중(70cm 미만)	4,000
	대(70cm 초과)	5,000
협탁	모든 규격	2,000
화장대	모든 규격	6,000
TV/오디오받침대	모든 규격	3,000

※ 상기 이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준용

[별표 2]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제2조 관련)

연번	품명	규격	연번	품명	규격
1	가습기	모든 규격	17	전화기	모든 규격
2	오디오셋트	높이 1m미만	18	전기밥솥	모든 규격
3	카세트라디오	모든 규격	19	보온밥통(솥)	모든 규격
4	다리미	모든 규격	20	녹즙(믹서)기	모든 규격
5	선풍기	모든 규격	21	토스터기	모든 규격
6	탈수기	모든 규격	22	<삭제>	<삭제>
7	공기청정기	높이 1m미만	23	컴퓨터 (본체, 모니터, 키보드)	모든 규격
8	청소기	모든 규격	24	컴퓨터오락기	모든 규격
9	정수기	높이 1m미만	25	노트북컴퓨터	모든 규격
10	전자렌지	모든 규격	26	모뎀	모든 규격
11	<u>전기오븐렌지</u>	높이 1m미만	27	TM 캐너	모든 규격
12	헤어드라이기	모든 규격	28	프린터기	모든 규격
13	에어컨실외기	모든 규격	29	복합기	모든 규격
14	<삭제>	<삭제>	30	팩시밀리	모든 규격
15	전기히터	모든 규격	31	시계 (전기 및 건전지 사용)	모든 규격
16	VTR/DVD	모든 규격			

[별표 3]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2조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종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지 ○ 책자, 노트, 종이쇼핑 팩, 달력, 포장지 ○ 종이컵, 팩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캔, 알루미늄캔(음· 식 용류) ○ 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료수병, 기타 병 ○ 농약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4. 고철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위와 같음
5. 플라스틱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T병, 합성수지 용기류, 일반가정용 생활용품, 페스치로폴 ※ 플라스틱 재질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이물질 및 라벨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 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컵라면 용기, 1회용 용기,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 재질로 코팅된 것은 제외

[별표 4]

쓰레기봉투의 규격별 종류(제10조 관련)

봉투용량(ℓ)	봉투규격(cm) (가로×세로)	종 류
5	26×46.5	일반용봉투(가연성)
10	33×56.5	일반용봉투(가연성, 불연성)
	36×53.5	일반용봉투(재사용종량제)
20	42×69.5	일반용봉투(가연성, 불연성)
	45×65.3	일반용봉투(재사용종량제)
30	48×78.5	가정사업계용봉투
50	56×91.5	일반용봉투(가연성, 불연성)
		공공용봉투
60	50×97	가정사업계용봉투
100	71×113.5	일반용봉투(가연성)
		공공용봉투
125	80×120	가정사업계용봉투

- ※ 비고 : 1. 실제 사용할 쓰레기 봉투제작 시에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여분의 길이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하되, 소수첫째자리에 반올림한다.

$$\text{여분의 길이(cm)} = \frac{\text{가로길이(cm)}}{\pi} + 5\text{cm}$$

[별표 5]

생분해성수지 함량표시(예) (제11조제2항 관련)

폴리에틸렌(PE)	전 분	지방족폴리에스테르
65%	15±2%	20±2%

[별표 6-1]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1조제4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쓰레기봉투(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 배출 시 무게기준 : ○○ℓ, ○○kg 이하로 배출
(무게기준은 50ℓ, 100ℓ에만 표기)

1. 이 봉투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폐종이류, 나무조각류, 상품포장재 등 가연성(불에 타는)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 봉투에 불연성(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할 경우 또는 무게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50ℓ:13kg이하, 100ℓ;25kg이하)에는 수거하지 않으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쓰레기는 지정된 배출시간(20:00~24:00)에 배출하시고,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투입구에 배출하십시오.
4. 침대, 장롱 등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를, 매립 등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운 생활쓰레기는 가정사업계용봉투를 별도로 구입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5.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등 자원순환서비스현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문의처: 서구청 자원순환과(☎ ○○○-○○○○)

서구 시설관리공단(☎ ○○○-○○○○)

 인증마크 인증번호	표시사항(품질표시) 품 목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종류/용도 : 용 량 : L 치 수 : (두께*너비*높이) 제 조 자 : 업체명(주소 및 연락처) (공 급 자)
-----------------------------------------------------------------------------------------------------	-----------------------------------------------------------------------------------------------------------------------

[별표 6-2]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1조제4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쓰레기봉투(ℓ)


-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용 -

1.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폐각류, 폐전구, 깨진 그릇 등 불연성(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이 봉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불연성 쓰레기를 버릴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3. 쓰레기는 지정된 배출시간(20:00~24:00)에 배출하십시오.
4. 침대, 장롱 등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를, 매립 등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운 생활쓰레기는 가정사업계용봉투를 별도로 구입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5.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등 자원순환서비스현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문의처: 서구청 자원순환과(☎ 〇〇〇-〇〇〇〇)

서구 시설관리공단(☎ 〇〇〇-〇〇〇〇)

 인증마크 인증번호	표시사항(품질표시) 품 목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종류/용도 : 용 량 : L 치 수 : (두께*너비*높이) 제 조 자 : 업체명(주소 및 연락처) (공 급 자)
-----------------------------------------------------------------------------------------------------	-----------------------------------------------------------------------------------------------------------------------

[별표 6-3]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1조제4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쓰레기봉투(ℓ)


- 가정사업계용 -

1. 이 봉투는 O O O 또는 O O O에 신고하면 수거합니다.
2. 처리대상 쓰레기(가정에서 발생된 사업계 쓰레기 중 가연성쓰레기): 고무, 피혁, 섬유, 폐도배지, 양탄자, 보온재, 폐목재, 오니류 등
3. 상기 쓰레기를 이 봉투에 버리지 않는 경우 일체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4.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등 자원순환서비스현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문의처: 서구청 자원순환과(☎ 〇〇〇-〇〇〇〇)

서구 시설관리공단(☎ 〇〇〇-〇〇〇〇)

 인증마크 인증번호	표시사항(품질표시)
	품 목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종류/용도 : 용 량 : L 치 수 : (두께*너비*높이) 제 조 자 : 업체명(주소 및 연락처) (공 급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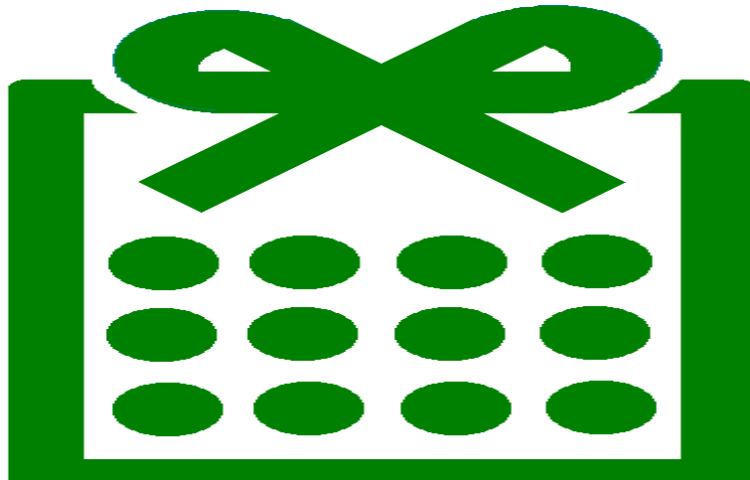
[별표 6-4]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1조제4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재사용 종량제봉투(ℓ) -


1. 상품을 담는데 사용 후 종량제봉투(불에 타는 쓰레기용)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2.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등 자원순환서비스현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문의처: 서구청 자원순환과(☎ 031-0000-0000)

서구 시설관리공단(☎ 031-0000-0000)

 인증마크 인증번호	표시사항(품질표시)
	품 목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종류/용도 : 용 량 : L 치 수 : (두께*너비*높이) 제 조 자 : 업체명(주소 및 연락처) (공 급 자)

[별표 6-5]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1조제4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공공용 쓰레기봉투(ℓ)

1. 이 봉투는 도로변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자원순환서비스헌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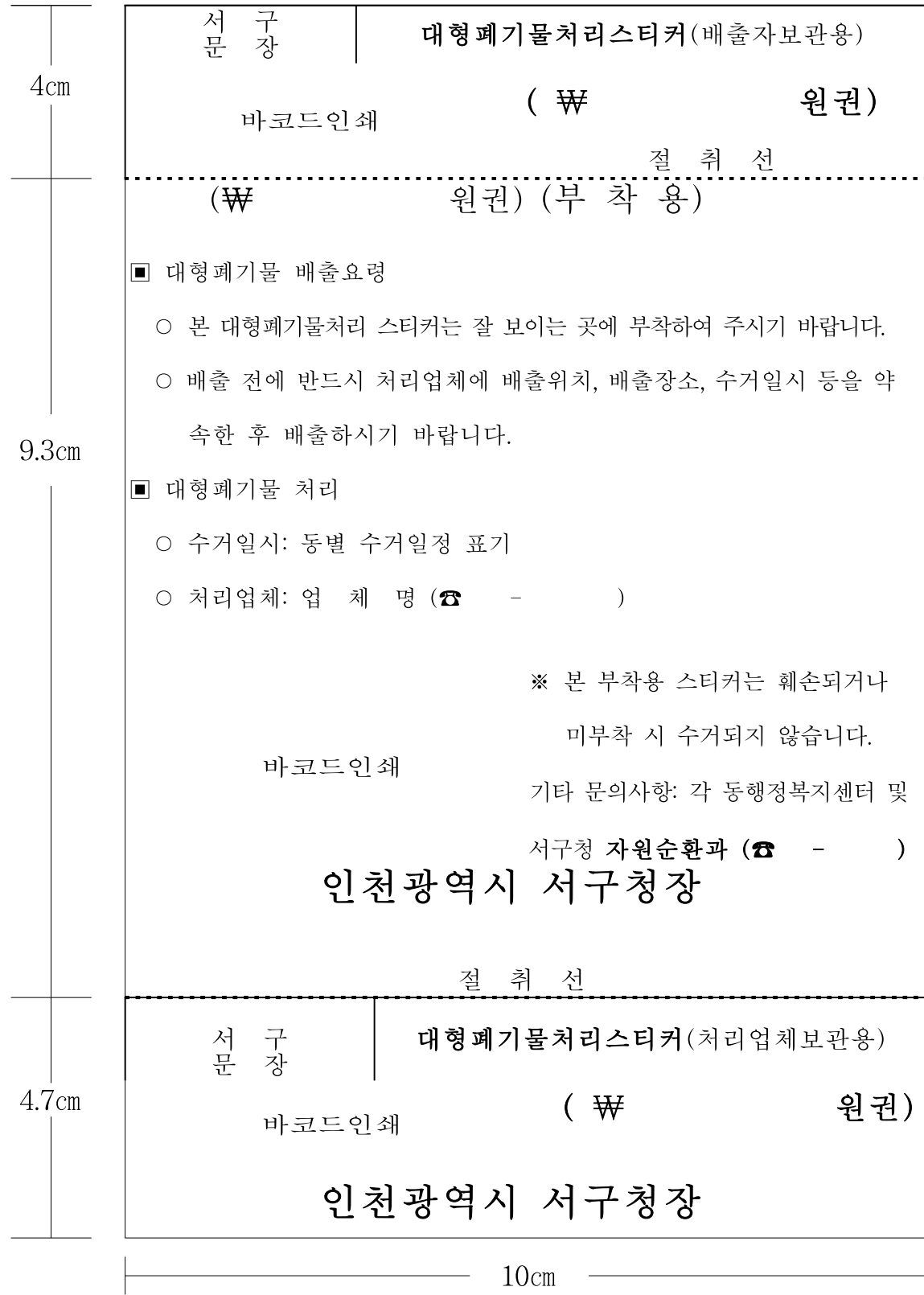
문의처: 서구청 자원순환과(☎ 031-0000-0000)

서구 시설관리공단(☎ 031-0000-0000)

 인증마크 인증번호	<p style="text-align: right;">표시사항(품질표시)</p> 품 목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종류/용도 : 용 량 : L 치 수 : (두께*너비*높이) 제 조 자 : 업체명(주소 및 연락처) (공 급 자)
-----------------------------------------------------------------------------------------------------	------------------------------------------------------------------------------------------------------------------------------------------------------

[별표 7]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모형(제11조제4항 관련)



※ 종류는 1,000원권, 3,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4종으로 1,000원권은 파랑색 바탕에 흰글씨, 3,000원권은 초록색 바탕에 흰글씨, 5,000원권은 주황색 바탕에 흰글씨, 10,000원권은 붉은색 바탕에 흰글씨로 한다.

[별표 8]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시(제12조제2항 관련)**쓰레기봉투 판매소**

주: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 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0분의 1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고딕으로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137), 녹색(DIC: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579), 녹색(DIC: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가격(제13조 관련)

구분		규격	판매가격		
			계	판매수수료	판매소 납품가격
봉투	일반용봉투 (가연성, 불연성)	5ℓ	160원	12원	148원
		10ℓ	310원	25원	285원
		20ℓ	620원	49원	571원
		50ℓ	1,540원	123원	1,417원
		100ℓ	3,070원	245원	2,825원
	가정사업계용 봉투	30ℓ	1,870원	150원	1,720원
		60ℓ	3,710원	290원	3,420원
		125ℓ	7,660원	610원	7,050원
스티커	대형폐기물처리용 스티커	1000원권	1,000원	79원	921원
		3000원권	3,000원	237원	2,763원
		5000원권	5,000원	395원	4,605원
		10000원권	10,000원	790원	9,210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사업장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u>대기환경보전법</u>」·「<u>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u>」 또는 「<u>소음·진동관리법</u>」에 따른 사업장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u>령</u>”이라 한다) 제2조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생 략)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류 등으로 제13조에 따른 	<p style="text-align: center;"><u>제1장 총칙</u></p> <p>제1조(목적) ----- ----- <u>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절한 처분을 촉진</u>----- ----- -----.</p> <p>제2조(용어의 정의)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 ----- ----- ----- ----- ----- ----- ----- -----. 3. (현행과 같음) 4. ----- ----- ----- ----- ----- -----.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하며,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이란 별표 10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6. (생략)

7.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7조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8. (생략)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 구역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 지역은 제외한다.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 지역에서 지역의 주민이 생활폐기물을 적환장 등에 이용·보관하였다가 수거를 요구할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그 경비를 실비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등의 설치·운

----- 별표 2-----.

5. 6. (현행과 같음)

7. “재활용가능자원” -----

----- 별표 3-----
-----.

8.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
----- 생활폐기물관리 구역-----

-----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② (현행과 같음)

③ ----- 생활폐기물관리 제외 지역-----

-----.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 ② (현행과

영) ①·②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② (생략)

③ 제1항제1호의 대행계약 방법은 도급방식으로 하며, 대행계약 기준은 실제 수집·운반·처리한 양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같음)

③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 발생지처리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국토기본법」에 따른 인천광역시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4조의 인천광역시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의2(구민의 의무) 구민은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으며 처리절차·방법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1.11.14, 개정 2017.3.29.)

5.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6.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제1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시간·배출용기·품목별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2017.3.29.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 . -----

 ----- 운반하여 처리
할 수 있다.

5.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3-----

 ----- .

6.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제1호-----

 ----- .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7조의 -----

 ----- . ----- 재활용가능
자원-----

1. 일반용 봉투

가. 가연성봉투 : 엷은 흰색으로 하며 생활쓰레기중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아야 한다.

나. 불연성봉투 : 엷은 녹색으로 하며 생활쓰레기중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담아야 한다.

다. 재사용종량제봉투 : 회백색으로 하며 상품을 담는데 사용 후 생활쓰레기중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아야 한다.

2. 가정사업계용봉투는 황색으로 하며, 일반용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정사업계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3. 공공용봉투 : 엷은 청색으로 하며 도로변 및 골목길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규격별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④·⑤ (생략)

제11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의 제작)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는 봉투 앞면에 별표 10에서 정한 예시에 따라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1. 일반용봉투의 용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
--- 생활쓰레기 중 -----
----- 담는 봉투

나. -----
--- 생활쓰레기 중 -----
----- 담는 봉투

다. -----

--- 생활쓰레기 중 -----
----- 담는 봉투

2. 가정사업계용봉투: -----

----- 담는 봉투

3. -----
----- 담는 봉투

③ -----
별표 4와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의 제작)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표 5 -----

문구, 구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구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등을 표시하고,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에는 구의 문장, 스티커금액, 배출요령, 처리 업체 연락처 그 밖의 불편사항 신고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0조 및 제2항에 따른 쓰레기 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제작사양은 각각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단, 자동집하시설에 배출되는 쓰레기봉투는 인식 스티커를 추가 부착하여 제작한다. (후단신설 2016.3.14, 개정 2016.3.14., 2017.3.29)

⑤·⑥ (생략)

제12조(쓰레기봉투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쓰레기봉투등의 공급을 위탁받은 자가 봉투판매소 또는 배출자에게 쓰레기봉투등을 공급할 때에는 방문 또는 유선 신청에 따르되, 일반용봉투는 구청장이

----- 고유번호 등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0조 및 제2항에 따른 쓰레기 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6-1부터 별표 6-5까지로 하고,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제작규격은 별표 7과 같다.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쓰레기봉투등의 공급 및 판매)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표 8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정한 봉투판매소까지, 가정사업
계용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출
장소까지 방문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환경정비를 위하여 청
소의 날 운영 및 가로변 청소를 하
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용봉투를
동주민센터와 도로환경미화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스티커 판매가격으로
하며 주민 필요에 따라 직접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0에
서 정한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3. (생략)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기준, 쓰레기봉투가격
및 판매수수료는 별표 7에 따른다.
-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부

⑤ -----

----- 동
행정복지센터-----
-----.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

-----.

1. ----- 재활용가능자원-----
-----.
2. -----

----- 별표 2
-----.
3. (현행과 같음)
- ② -----

----- 별표 9-----.
- ③ -----

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50퍼센트 이내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신고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관할 법원에 과태료 재판이 신청된 경우 및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 등) 투기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 1.15, 개정 2003. 4.16, 2017.3.29.)

<신 설>

제1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영 제38조의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고,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에 대한 관련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신 설>

 ----- 휴지 등 -----

제4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 제3항까지의 -----

 ----- 따른다.

제5장 보칙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업무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쓰레기봉투 공급 및 대금납입 절차 수정 (안 제7조)
- 나. 쓰레기봉투 판매 관련 서식 등 정비(안 별지 서식1호부터 별지 서식18호까지)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 나. 개정안 : 별지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2항에 따라”로, “의거”를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 규정에 의거”를 “제2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반품요청시”를 “반품요청 시”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0일 이상”을 “30일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을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쓰레기봉투등 공급 및 대금납입)”을 “(쓰레기봉투등 공급 및 대금납부)”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쓰레기봉투등 공급 및 대금납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을 위탁받은 자는 판매소로부터 쓰레기봉투 등의 구입을 신청받고, 판매대금을 징수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마감시간 이후의 판매대금은 다음날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작시”를 “제작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를 “20퍼센트”로, “부과일로부터 1월이내”를 “부과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쓰레기봉투등”을 “쓰레기봉투 등”으로,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11호서식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반용 쓰레기봉투 수불부(별지 제12호서식)
2. 일반용 쓰레기봉투 판매소 공급대장(별지 제13호서식)
3. 가정사업계용 쓰레기봉투 수불부(별지 제14호서식)
4. 가정사업계용 쓰레기봉투 공급대장(별지 제15호서식)
5.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수불부(별지 제16호서식)
6.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판매대장(별지 제17호서식)

④ 별지 제11호서식부터 제17호서식까지의 작성과 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제15조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9호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기준

구 분	기 준
일반판매소	일반판매소는 슈퍼, 잡화상 등 인근 주민이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소로 지정한다.
구내판매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내 판매소는 3층 이상의 고층건물, 공공기관, 대형소매점(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종합소매업으로서 100㎡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수퍼마켓·편의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물의 상주인원 또는 이용인원이 상시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에 지정한다. 2.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참작하여 동일 시설물 내부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임시판매소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에 지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상호		판매소 전화번호		
판매소주소				
판매소구분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 약도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쓰레기봉투 판매 지정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판매소주소			
판매소구분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

(뒷면)

판매자 준수사항

1. 쓰레기봉투판매지정서 및 표시판을 주민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게첩)하여야 한다.
2. 쓰레기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협력하여야 하며, 파손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주민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3. 진열장 내외를 항상 깨끗이 정돈하고 소비자에게 친절하고 건전한 상행위를 다하여야 한다.
4. 판매인의 명의(승계)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일 10일 전 판매상호 및 명의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또한, 판매인(대표자)의 사고, 그 밖의 사유로 휴·폐업하고자 할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건전사회풍토 조성에 물의를 빚어 계도 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봉투판매소 지정을 취소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고서

판매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판매소 주소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수수료
	없음

(별지 제6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휴업·폐업) 신고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		판매소 주소	
사유			
휴업일 경우			
휴업기간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휴업·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판매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판매소 지정서(폐업인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별지 제7호서식)

쓰레기봉투 등 판매대금 영수증(판매소 교부용)

영 수 증 (공급자 보관용)							
판매소번호				상 호			
성 명				전 화 번 호			
영업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판 매 내 역							
종류	수량(매)	단가(원)	금액(원)	종류	수량(매)	단가(원)	금액(원)
				합 계	원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담당자		
년 월 일					인수자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							

영 수 증 (판매소 보관용)							
판매소번호				상 호			
성 명				전 화 번 호			
영업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판 매 내 역							
종류	수량(매)	단가(원)	금액(원)	종류	수량(매)	단가(원)	금액(원)
				합 계	원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담당자		
년 월 일					인수자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							

(별지 제10호서식)

무 단 투 기 적 발 신 고 서

신 고 자	성 명 (한 자)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은 행 명 (계좌번호)	()	은행	
위 반 자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반일시		위 반 내 용	
	위반장소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자에 대해서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귀 하

첨부: 현장 사진 및 증거물

(별지 제11호서식)

쓰레기봉투등 판매실적 보고

(단위: 매/원)

구 분		수령매수	판 매 실 적		판매잔량	비고
			수 량	금 액		
일 반 용	총 계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5ℓ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10ℓ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20ℓ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50ℓ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100ℓ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가 정 사 업 계	총 계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30ℓ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60ℓ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125ℓ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대 형 폐 기 물 처 리 스 터 커	총 계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1,000원권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3,000원권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5,000원권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10,000원권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별지 제12호 서식)

일반용 쓰레기봉투 수불부

월 / 일	인 수 량						공 급 량						잔 량						결 재			
	계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계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계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																						
/																						
/																						
/																						
/																						
/																						
/																						
/																						
/																						
/																						
/																						
/																						

(별지 제13호 서식)

일반용 쓰레기봉투 판매소 공급대장

월 / 일	판 매 소		판 매 량												결 재			
	상 호	성 명	계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가정사업계용 쓰레기봉투 공급대장

월 / 일	신 청 인		관 매 량								수거 확인	결 채		
	주 소	성 명	계		30ℓ		60ℓ		125ℓ					
			매수	금 액	매수	금 액	매수	금 액	매수	금 액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대형 폐기물 처리 스티커 수불부

월 / 일	신 청 인			품목	규격	수수료	스티커 관리번호				결 재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1,000원권	3,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													
/													
/													
/													
/													
/													
/													
/													
/													
/													
/													
/													
/													

(별지 제17호서식)

대형 폐기물 처리 스티커 판매대장

월 / 일	1,000원권			3,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결 재		
	총인수량	판매량	잔 량	총인수량	판매량	잔 량	총인수량	판매량	잔 량	총인수량	판매량	잔 량			
/															
/															
/															
/															
/															
/															
/															
/															
/															
/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인천광역시서구 폐기물관리</u> 에 관한 조례(이하 “ <u>조례</u>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인천광역시서구 폐기물관리</u> 에 관한 <u>조례</u> 」----- -----.
제2조(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① · ② (생략) ③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신청을 받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확인한 후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2. (생략)	제2조(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따라 ----- -----. ④----- 제3항에 따른 ----- ----- 제2항에 따라 ----- ----- 따라 ----- ----- 각 호----- -----.
제3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2조 규정에 의거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소비자의 <u>반품요청시</u> 즉시 판매가로 반환조치 7. <u>기타</u> 행정지시사항	제3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2조에 따라 ----- ----- 각 호----- -----. 1. ~ 5. (현행과 같음) 6. ----- <u>반품요청시</u> ----- ----- 7. <u>그 밖의</u> -----

② (생략)

제4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소의 폐업·휴업 등의 신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 또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판매소 폐업·휴업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소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 2.·3. (생략)
- 4.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쓰레기봉투등 공급 및 대금 납입) ① 판매소로 지정된 자가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봉투대금을 수납은행에 납부한 후 영수증을 제시한 자에게 공급한다.

② 가정사업계용봉투 및 대형폐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

----- 따라
-----.

제5조(판매소의 폐업·휴업 등의 신고) -----

----- 따라
-----.

제6조(판매소 취소) -----
----- 어느 하나 -----
-----.

- 1. ----- 30일 이상 -----

- 2.·3. (현행과 같음)
- 4.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

제7조(쓰레기봉투등 공급 및 대금 납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을 위탁받은 자는 판매소로부터 쓰레기봉투 등의 구입을 신청받고, 판매대금을 징수한 경우, 별지

기물처리스티커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지정한 곳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대금납입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다음날까지 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을 위탁받은 자는 봉투판매소 또는 배출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내에 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마감시간 이후의 판매대금은 다음날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쓰레기봉투 서손·회손처리) ①판매자는 공급된 종량제 규격봉투의 제작시 발생한 서손·회손봉투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고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작성하고 제작업체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쓰레기청결 포상금 지급방법) ①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접수된 신고서는 민원사무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다음 각

제7호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마감시간 이후의 판매대금은 다음날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쓰레기봉투 서손·회손처리) ①-----
----- 제작 시 -----

-----.

②----- 별지 제9호서식-----
-----.

제9조(쓰레기청결 포상금 지급방법) 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쓰레기청결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로 하며, 지급
기일은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1
월이내로 한다.

제10조(관련장부의 작성 등) ①구
청장은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
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1.일반용 쓰레기봉투 수불부(별
지 제13호서식)

2.일반용 쓰레기봉투 판매소 공
급대장(별지 제14호서식)

3.가정사업계용 쓰레기봉투 수
불부(별지 제15호서식)

4.가정사업계용 쓰레기봉투 공
급대장(별지 16호서식)

5.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수불
부(별지 제17호서식)

6.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판매
대장(별지 제18호서식)

② (생략)

③구청장의 쓰레기봉투등의 공
급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
여 쓰레기봉투 등의 실적을 별

호-----
-----.

1. ~ 3. (현행과 같음)

②-----
----- 20퍼센트-----
----- 부과일부터 1개
월 이내-----.

제10조(관련장부의 작성 등) ①--

----- 각 호-----
-----.

1.일반용 쓰레기봉투 수불부(별
지 제12호서식)

2.일반용 쓰레기봉투 판매소 공
급대장(별지 제13호서식)

3.가정사업계용 쓰레기봉투 수
불부(별지 제14호서식)

4.가정사업계용 쓰레기봉투 공
급대장(별지 15호서식)

5.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수불
부(별지 제16호서식)

6.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판매
대장(별지 제17호서식)

② (현행과 같음)

③----- 쓰레기봉투 등-----

----- 별

지 제12호서식에 의거 다음달 2
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 제11조(쓰레기봉투 무료지급) ①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한 무료
지급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상
의 세대원에 한하되, 동거인은
제외한다. 다만, 이혼한 모가 자
녀를 부양할 경우는 제외한다.
- ②구청장은 대상자에게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고 수불 상황을
별지 제19호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지 제11호서식으로 -----
-----.

④ 별지 제11호서식부터 제17호
서식까지의 작성과 관리는 전산
으로 할 수 있다.

- 제11조(쓰레기봉투 무료지급) ①-
--- 제15조에 따른 -----

-----.
- ②-----

--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
-----.
- ③ (현행과 같음)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약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